[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블록]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19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사전 신청접수일 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9)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께 1인 1건 청약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시흥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이상 소유한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2순위 신청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①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9) 현재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8.12.19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9.06.19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이 경우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의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의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 공급대상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단,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⑦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①항 및 제26조제①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nd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예비입주자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②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특별공급 신혼부부 공급비율이 기존 10% → 20%(민영주택 기준) 확대되고 혼인기간을 5년이내 → 7년 이내로 확대,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①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함.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함. ③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의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1억3천만원), 비수도권(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의 기준 참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하여 최하층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의미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높은 경우 포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의 지역우선공급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합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⑥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자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자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의 당첨된 청약통장은 관계없이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재당첨제한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최초계약자가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전매자 포함)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2020.02.21일 이후부터는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내에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31-1번지 인근에 설치되며,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hndapt.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42810호(2019.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현 공공주택지구 C-4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지상 25층 7개동 총 676세대 [일반 특별공급 49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6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주차대수 : 아파트 1,084대, 세대당 1.60대, 근린생활시설 41대, 총 1,125대]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세대수	일반분양세대수	1층우선배정세대수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9001127-01	84.5472A	84.5472	23.2449	107.7921	62.3599	170.1520	53.9506	407	40	40	81	12	173	234	11	2022년 12월
	2019001127-02	84.8302B	84.8302	23.8876	108.7178	62.5686	171.2864	54.1312	99	9	9	19	2	39	60	4	
	2019001127-03	104.3840	104.3840	29.2210	133.6050	76.9911	210.5961	66.6087	170	–	17	–	5	22	148	2	
	계								676	49	66	100	19	234	442	17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 VAT포함 / 발코니 확장비 미포함)

주택형	동별(라인별)	층구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중도금 1회(10%) 2020.06.16	2회(10%) 2020.12.16	3회(10%) 2021.06.16	4회(10%) 2021.11.16	5회(10%) 2022.03.16	6회(10%) 2022.07.16	잔금(30%) 입주지정일
84㎡A	1601동(1,2,3,4호) 1602동(2,3,4호) 1603동(1,2,3,4호) 1604동(3호) 1605동(3호) 1606동(2호) 1607동(1,3,4호)	1층	11	160,970,000	231,430,000	392,400,000	39,240,000	39,240,000	39,240,000	39,240,000	39,240,000	39,240,000	39,240,000	117,720,000
		2층	14	160,970,000	244,730,000	405,70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121,710,000
		3~4층	34	160,970,000	255,230,000	416,20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124,860,000
		5~9층	85	160,970,000	264,230,000	425,20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42,520,000	127,560,000
		10~15층	102	160,970,000	269,930,000	430,90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43,090,000	129,270,000
		16층이상	161	160,970,000	275,530,000	436,50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130,950,000
84㎡B	1604동(2호) 1605동(2호) 1606동(3호) 1607동(2호)	1층	4	161,510,000	234,290,000	395,800,000	39,580,000	39,580,000	39,580,000	39,580,000	39,580,000	39,580,000	39,580,000	118,740,000
		2층	4	161,510,000	247,690,000	409,20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122,760,000
		3~4층	8	161,510,000	258,290,000	419,80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125,940,000
		5~9층	20	161,510,000	267,490,000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0~15층	24	161,510,000	273,090,000	434,60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130,380,000
		16층이상	39	161,510,000	278,790,000	440,30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132,090,000
104㎡	1602동(1호) 1604동(1,4호) 1605동(1,4호) 1606동(1,4호)	1층	2	198,730,000	274,450,000	473,180,000	47,318,000	47,318,000	47,318,000	47,318,000	47,318,000	47,318,000	47,318,000	141,954,000
		2층	7	198,730,000	290,510,000	489,240,000	48,924,000	48,924,000	48,924,000	48,924,000	48,924,000	48,924,000	48,924,000	146,772,000
		3~4층	14	198,730,000	303,160,000	501,890,000	50,189,000	50,189,000	50,189,000	50,189,000	50,189,000	50,189,000	50,189,000	150,567,000
		5~9층	35	198,730,000	314,050,000	512,780,000	51,278,000	51,278,000	51,278,000	51,278,000	51,278,000	51,278,000	51,278,000	153,834,000
		10~15층	42	198,730,000	320,870,000	519,60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51,960,000	155,880,000
		16층이상	70	198,730,000	327,580,000	526,310,000	52,631,000	52,631,000	52,631,000	52,631,000	52,631,000	52,631,000	52,631,000	157,893,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84A	84B	104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84.5472A	84.8302B	104.3840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에서의 면적증감으로 공유대지지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함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기타 추가선택품목 등] 비용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 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가산)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10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6	1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2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1	–	5
	중소기업 근로자		14	3	–	17
	북한이탈주민		2	–	–	2
	장애인	경기	6	2	–	8
		인천	3	1	–	4
		서울	3	1	–	4
	소계		40	9	–	4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0	5	8	3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0	4	9	33
	소계		40	9	17	6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시흥시 1년이상 거주자(30%)	18	5	–	23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12	3	–	15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31	7	–	38
	소득기준 일반공급(25%)	시흥시 1년이상 거주자(30%)	6	1	–	7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4	1	–	5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10	2	–	12
	소계		81	19	–	10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흥시 1년이상 거주자(30%)		4	1	2	7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2	–	1	3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6	1	2	9
	소계		12	2	5	19
합계			173	39	22	23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시흥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4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6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시흥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0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액(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란 공란으로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자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견본주택 비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봄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동 · 호수 결정 방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특별공급 당첨자 동 · 호수 결정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일 주택형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 주택의 당첨 동 · 호수 및 미계약 동 · 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예비로 전환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셔야 하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당첨계약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동 · 호수를 배정받은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기회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참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당사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등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전산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증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 이전 없이 기존 예치금액보다 큰 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 접수불가) - 청약예금의 주택규모 변경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봄. ※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2순위 포함)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전산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시 입력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 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100%) • 무주택세대 구성원,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 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시흥시(1년 이상) / 경기도(6개월 이상)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6개월 미만)
		85㎡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50%를 적용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2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시흥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아니함 : 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함.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및 동 · 호수 결정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 결정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가 수도권 거주자(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보다 우선함.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ndapt.co.kr)에 공개된 후,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청약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청약 신청일정 및 방법

■ 특별공급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방법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시흥시(1년 이상) / 경기도(6개월 이상)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6개월 미만)	인터넷 청약	2019.12.24(화) 08:00 ~ 17:30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포함) ※ 특별공급의 경우 APT2you 앱으로 접수불가
			견본주택 방문 청약	2019.12.24(화) 10:00 ~ 14:00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 시흥장현 유승한내들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내 고1부지(장현동 331-1번지 인근)]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19.12.26(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인터넷 청약신청(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www.apt2you.com) / 스마트폰(APT2you 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www.kbstar.com) / 스마트폰(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12.27(금) 08:00 ~ 17:30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해당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 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등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 발표 및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발표 및 동 · 호수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01.03.(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한 경우에는 청약한 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하며 입력 오류에 의해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내역'에 의한 당첨여부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구분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0.01.04(토) 10:00 ~ 2020.01.06(월) 18:00	견본주택 방문 제출	• 시흥 장현지구 유승한내들 견본주택 -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내 고1부지(장현동 331-1번지 인근)

■ 예비당첨자 입주자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추후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 이후 동 · 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및 당첨자 발표신문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1.03(금) ~ 2020.01.12(일)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제공일시	2020.01.0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Ⅵ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1.14(화) ~ 2020.01.16.(목) 3일간, 10:00 ~ 16:00	시흥 장현지구 유승한내들 견본주택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내 고1부지(장현동 331-1번지 인근)]	지정된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계약금 무통장 입금 내역서 지참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은행	301-0261-8334-41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농협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주택청약전산검색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향후 12개월 청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예금 등을 불법 거래하여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 ·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사업시행인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체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계약자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할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은 유이자로,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보증수수료를 기일에 맞춰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당첨자로 관리됨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가점제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주택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도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일자 중 빠른 날로 처분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청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 여부 판단 시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 ·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비고
공통	○		• 본인확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 불가]	
	○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	• 출입국사실증명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 시) - 군 복무확인서(10년이상)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자 본인 발급분)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계약위임시는 제출생략) 1통,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계약 위임용)1통 - 대리인의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받아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등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적용됨, 단, 기납입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제③항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41실 등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 원, VAT포함)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금액	대금납부 일정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84A	7,200,000	720,000	6,480,000
84B	7,000,000	700,000	6,300,000
104	9,700,000	970,000	8,73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개된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20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금액으로 미설치 품목 대한 감소비용 및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선택 선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할 경우,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용의 공사 결과에 따라 세대별 사이즈, 층별, 창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새시 등은 우선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해당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단열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요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의 구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 배수구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공간의 폭, 깊이 및 천정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비확장시 각종 선택품(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선택 옵션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유형	구분	선택 및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실내기	실외기	제조사
84A	일반형	선택1	(거실+침실1) : 2대	3,400,000	340,000	3,060,000	M-Q0720C2S(거실) M-Q0320C2S(침실1) M-Q0200C2S(침실2,3,4)	MUQ1100S25V	LG전자
		선택2	(거실+침실1,2,3) : 4대	5,900,000	590,000	5,310,000		MUQ1450S25V	
		선택3	(거실+침실1,2,3,4) : 5대	7,200,000	720,000	6,480,000		MUQ1450S25V	
	공기청정형	선택4	(거실+침실1) : 2대	3,900,000	390,000	3,510,000	M-Q0720C2C(거실) M-Q0320C2C(침실1) M-Q0200C2C(침실2,3,4)	MUQ1100S25V	
		선택5	(거실+침실1,2,3) : 4대	6,900,000	690,000	6,210,000		MUQ1450S25V	
		선택6	(거실+침실1,2,3,4) : 5대	8,450,000	845,000	7,605,000		MUQ1450S25V	
84B	일반형	선택1	(거실+침실1) : 2대	3,400,000	340,000	3,060,000	M-Q0720C2S(거실) M-Q0320C2S(침실1) M-Q0200C2S(침실2,3,4)	MUQ1100S25V	
		선택2	(거실+침실1,2,3,4) : 5대	7,200,000	720,000	6,480,000		MUQ1450S25V	
	공기청정형	선택3	(거실+침실1) : 2대	3,900,000	390,000	3,510,000	M-Q0720C2C(거실) M-Q0320C2C(침실1) M-Q0200C2C(침실2,3,4)	MUQ1100S25V	
		선택4	(거실+침실1,2,3,4) : 5대	8,450,000	845,000	7,605,000		MUQ1450S25V	
104	일반형	선택1	(거실+침실1) : 2대	3,500,000	350,000	3,150,000	M-Q0720C2S(거실) M-Q0400C2S(침실1) M-Q0200C2S(침실2,3,4)	MUQ1100S25V	
		선택2	(거실+침실1,2,3,4) : 5대	7,300,000	730,000	6,570,000		MUQ1450S25V	
	공기청정형	선택3	(거실+침실1) : 2대	4,000,000	400,000	3,600,000	M-Q0720C2C(거실) M-Q0400C2C(침실1) M-Q0200C2C(침실2,3,4)	MUQ1100S25V	
		선택4	(거실+침실1,2,3,4) : 5대	8,550,000	855,000	7,695,000		MUQ1450S25V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될 경우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미설치 감소비용 및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세대에만 옵션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에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변형 벽체 미설치시 시스템에어컨 설치 수량은 조정할 수 없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 시스템에어컨 선택3 및 선택6은 선택사항(팬트리형 or 침실4형) 침실4형 선택시에만 가능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스포크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제조사
84A	선택1	3도어(냉장, 냉동, 김치)	PR39R7605AP / RZ32R7605AP / RQ32R7612AP	3,900,000	390,000	3,510,000	삼성전자
	선택2	4도어+김치플러스	RF61R91C3AP / RQ33R7422AP	5,100,000	510,000	4,590,000	
84B	선택1	3도어(냉장, 냉동, 김치)	PR39R7605AP / RZ32R7605AP / RQ32R7612AP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4도어+김치플러스	RF61R91C3AP / RQ33R7422AP	4,700,000	470,000	4,230,000	
104	선택1	3도어(냉장, 냉동, 김치)	PR39R7605AP / RZ32R7605AP / RQ32R7612AP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4도어+김치플러스	RF61R91C3AP / RQ33R7422AP	5,100,000	510,000	4,590,000	

※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

3)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제조사
전평형	빌트인냉장고(홈바타입)	S711S24B	5,250,000	525,000	4,725,000	LG전자

※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

4) 빌트인 김치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제조사
전평형	빌트인김치냉장고+TL장	K221PR14BL1/R1	2,200,000	220,000	1,980,000	LG전자

※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

5) 주방상판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제조사
84A	선택1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900,000	190,000	1,710,000	롯데첨단소재 현대L&C LG하우시스
	선택2	주방상판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2,500,000	250,000	2,250,000	
84B	선택1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900,000	190,000	1,710,000	
	선택2	주방상판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2,500,000	250,000	2,250,000	
104	선택1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900,000	190,000	1,710,000	
	선택2	주방상판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2,500,000	250,000	2,250,000	

※ 엔지니어드스톤 시공 시 일부 접합면에 이음부 표시가 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

6) 가스쿡탑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제조사
전평형	인덕션 2구+HI 1구	ERA-BT030	800,000	80,000	720,000	SK매직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000	80,000	720,000	

※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

7) 오븐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제조사
전평형	선택1	스팀오븐	EON-B401SA	550,000	55,000	495,000	SK매직
	선택2	IOT오븐	EON-B440SA	800,000	80,000	720,000	

※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

8) 식기세척기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지정일)	제조사
전평형	식기세척기	DWA-7505B	600,000	60,000	540,000	SK매직

※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

■ 유상옵션(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은행	301-0261-8389-51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을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기타 추가선택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동법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품목으로 인한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기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일체의 계약(신규, 해지)변경이 불가합니다. ※ 플러스옵션 A/S기간은 시스템에어컨 2년입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공급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전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선택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가 배정된 후, 당첨자의 계약 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품목
일괄선택	문	각실 출입문	문틀,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현관 도어락, 대피공간 문짝
	바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바닥마감재(지정 마루판, 타일, 석재, 걸레받이)	바닥난방, 욕실 · 발코니 바닥 방수 및 배수슬리브
	벽, 천정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벽지 및 천정지, 걸레받이, 거실 아트월, 발코니 벽 및 천정도장, 주방벽 타일, 몰딩(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포함)	벽: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정 : 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욕실	공용/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정재, 석재, 재료분리대, 코킹, 위생기구(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악세서리류, 욕실장, 욕실문틀, 욕조 및 뒷선반, 욕실환풍기, 콘센트, 칫솔살균기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 급탕 등 매립배관), 배기덕트, 바닥 · 벽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주방 및 식당, 다용도실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아일랜드주방, 주방벽타일, 레인지후드, 주방수전, 씽크볼, 절수기, 주방TV, 음식물탈수기, 주방가전일체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욕실등 포함)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가구 및 기타사항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현관 신발장, 거실, 주방 및 팬트리, 침실 붙박이장(드어포함), 드레스룸장/파우더장, 시스템선반, 다용도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침실1)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 원)

주택형	84A	84B	104	비고
마이너스옵션금액	26,679,000	26,908,000	34,050,000	

3)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 마감재를 공급가격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용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세대는 발코니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사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Ⅷ 기타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항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휘트니스 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향후 입주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 석축 등의 종류 · 높이 ·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실외기 등),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앞 보도블록은 향후 인 · 허가 및 실 시공등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흥 장현 공공주택지구 외 남측부와 인접한 지역에 견사 위치, 시흥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북측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단지 동측 및 남동측 야산, 단지 남서측에 개인의 분묘단지 위치, 단지 서측에 근린상업지구 및 주유소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미관상 불편함, 냄새 또는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학교예정부지 내 학교설립 확정여부와 개교시기는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의거설립 제반 절차(학교설립계획심의, 재정투자심사 등)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 · 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설립이 확정될 시 (가칭)장현1초(2023년 3월 이후 개교로 추진 예정), 중학교의 경우 입주시기 기준 중학군 · 구 고시에 해당하는 중학군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 개발지구 내 (가칭)장현1초 예정부지는 설립이 미확정된 사안으로 2023년 3월 개교예정으로 설립 제반절차를 검토 중에 있으나, 향후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설립계획이 취소 · 변경 ·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조정(단축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사전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를 사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칭)장현1초등학교가 2023년 3월 개교예정으로 설립이 확정될 시 본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2022년 12월 예정 인 바 개교일 이전 전학이 불가하므로 학생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입주일자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예정부지는 단지 북동쪽에 위치하여 3차선(감속차선 포함 5차선)을 횡단하여야 하므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학로 등에 대한 여건 미확인으로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는 시흥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시흥 지역 중학교 배정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의거 중학교 내 지망순서 작성에 따른 컴퓨터 추첨 배정으로 근거리 배정이 아닙니다. •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C-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고등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한 바, 주택건설사업(676세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등학생은 시흥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가능합니다.

2)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 견본주택에는 84A, 84B, 104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원형디퓨져는 견본주택 환기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전반 ·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기, 통신 등의 배선 및 배관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된 조명기구 및 일부 소품은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욕실 타일, 주방 벽체 타일 등은 실제 시공시 규격과 나누기, 줄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는 촬영, 보관하여 추후 공사에 활용됩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과 견본주택에서 확인 불가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주체 사무실 및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단지의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조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외벽마감, 식재, 조경, 단지 내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공간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평면 및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별 실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행된 마감재 등은 일부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 평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및 실시공등 구조/성능/상품개선(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 입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등)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설계 변경도서에 따라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문주 조명, 주차장 진 ·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내부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계획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 진입 시 화물차(택배차 등)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붕 층에는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및 피뢰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방재실)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옥탑 · 외벽의 구조물 및 옥탑 디자인은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에 건립 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실 · 기계실의 환기용 급 ·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구 등이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진 · 출입 램프 등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조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층의 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으니 입주 시 이사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등의 높이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대지 북측(1604동)과 동측(1605동, 1606동) 유수지 사이에는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1604동 기준 옹벽과의 이격거리(최고10m)와 높이(최고10.15m) 단차에 따른 옹벽(토목 옹벽, 건축 옹벽, 조경석 등)이 설치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공사 시 단차 및 옹벽(높이, 형태, 재질, 색상, 마감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치 및 조경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 식재 등은 각종 심의 및 인 · 허가 과정이나 시공 여건에 따라 수량, 규격, 종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선, 기능,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 간의 상호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권 및 일조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동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석,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위치 및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동 공용시설 및 입면
• 각동 저층부는 외벽은 석재마감 되며, 필로티 내부등 일부분은 뿜칠마감 됩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풍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캐노피 또는 동 출입구에 의한 조명 등으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된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 통로, 문주 조명,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은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외벽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차시설
• 단지 내 출입구(북측, 남측)에 설치되는 주차 차단기는 차량통행 및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북측 출입구에서 진입 가능하고, 지하주차장 1층에 별도로 주차장이 구획 설계되어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의 진 · 출입시와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출차시 다소 교통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골조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동별 주차장 레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독립된 동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문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세대 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고,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는 2개소(총 6대)로 지하주차장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1개소(3대)는 102동 및 103동 사이, 1개소(3대)는 주민공동시설 남측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통신, 사용비용, 운영방안등은 입주민들이 협의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문주,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각 시설의 위치를 현황적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설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내외 구성, 외관 및 배치 등이 다소 실제 시공 시 변경되어 통합, 사용자 편의, 입면 형태,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보관소(1601동 북측, 1602동 북측, 1603동 북측, 1604동 동측, 1605동 북측, 1606동 북측, 1607동 북서측)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수량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등 주체로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옥외 관정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단차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설치형태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단위세대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면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색상은 제조업체,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실시공 시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류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상이하며, 그 설치공간보다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될 가구(장롱, 붙박이장)의 설치 필요시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벽 마감 두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공간의 크기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는 주변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기타 세대 간 설비 배관 등은 입면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발코니 등은 배수를 위하여 물 흐름 방향 쪽으로 구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상부 천장 등에는 점검구가 있으며 욕실 천장 점검구는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인테리어 마감재 두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장의 재질, 색상, 부위 등의 위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 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 설치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부위 등의 세대간 구조 및 형태, 시스템 등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 전용공간 등에는 환기용 댐퍼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주방 실외기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세대의 발코니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등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접합부 등은 설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완강기 등)이 설치되며 그 위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 세대는 지역난방으로 공급되어 세대별로 기계설비를 설치합니다.
• 가변형 구조 벽체를 설치하는 세대는 가변형 벽체 주변의 벽, 천정 등은 마감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 통일 및 시각적인 통일성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세대에 배치되는 발코니는 비확장 세대와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어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공급관 인입위치 등에 따라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 분전반, 통신 단자함,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배관 등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콘센트 등은 인테리어 공사 등 또는 협의 등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발코니 및 외부 창호 등의 입면은 정해져 있으며, 계약자 및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대현관과 인접한 계단실 또는 세대 엘리베이터 홀 등에 설치되는 EV홀 채광창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다른 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설치 위치 등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골조 상부의 이질벽체 접합부 등의 경우 일부 균열 및 크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방지를 위한 시공을 하여도 건조수축에 의한 미세 균열 등의 생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축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 깊이 및 형태는 세대 내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으로 인하여 세대 내부의 면적과 치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세대의 실제 면적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 및 무상옵션 등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사강도 및 단열재 등의 설치를 위해 일부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에 위치한 점검구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온도 차이로 인하여 각 실의 외벽 등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 104 타입에 설치되는 폴딩도어는 발코니와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자재 특성상 기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성능 세대 내부 천장 등에 결로방지 및 관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등에서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시 설치는 우선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의 수전 및 기타 물이 들어오는 곳에는 방수 처리를 하며, 이로 인한 동일 세대간 설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 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구조 변경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가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내 발코니 등의 확장 및 외부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접세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벽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 옥외 시설물 배관 및 배선, 점검을 위한 점검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세대에서 시행되는 발코니 확장 공사는 세대 내 화재 시 피난 등을 위해 마련된 대피공간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림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향,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명유리,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실사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설치되는 세대에서 발코니 창호 등의 설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부위의 단열 등이 다르며, 이로 인해 안전한 차음도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체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높이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단위세대)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하며 입주 전 국토부 시험 결과 및 기타사항 인증서 등에 의해 반영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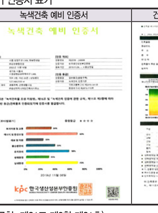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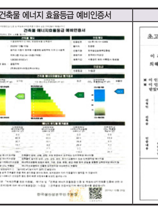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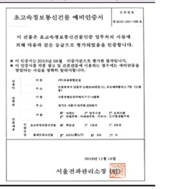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각 1개소에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제5조 제12호 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사용여부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금라기술단	㈜금라기술단
감리금액	2,172,600,100	534,230,000	247,500,000	13,2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4)	택지매입원가		99,692,117	건축비 (58)	건축 (23)	철근콘크리트공사	35,753,000	건축비 (58)	기계설비 (9)	위생기구공사	1,023,000
	기간이자		2,924,223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022,000
	필요적 경비		5,116,994			조적공사	1,597,000			가스설비공사	624,000
	그밖의 비용		7,555,046			미장공사	2,079,000			자동제어설비공사	287,000
	계		115,288,380			단열공사	1,307,000			특수설비공사	605,000
건축비 (58)	토목 (13)	토공사	3,579,000			방수,방습공사	1,525,000			공조설비공사	567,0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4,040,000		그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5,447,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2,009,000			정보통신공사	1,881,000
		옹벽공사	473,000			금속공사	1,411,000			소방설비공사	6,354,000
		석축공사	281,000			지붕 및 홈통공사	488,000			승강기공사	1,962,000
		우,오수공사	557,000			창호공사	4,916,000		그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5,027,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212,000			이윤	5,526,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579,000			타일공사	2,728,000		계		120,431,000
		도로포장공사	656,000			돌공사	1,786,000	간접비 (6)	설계비		828,854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84,000			도장공사	847,000		감리비		2,967,53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902,000		일반분양시설경비		20,200,000
		조경공사	2,528,000			수장공사	1,245,000		분담금 및 부담금		4,638,195
		부대시설공사	1,936,000			주방용구공사	1,919,000		보상비		–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832,000			잡공사	2,179,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25,882,764
		가시설물공사	665,000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1,596,000		계		54,517,343
		지정 및 기초공사	4,648,000			급탕설비공사	1,651,000	그밖의 비용(1)			15,050,777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898,000	합계			305,287,500

■ 「주택법」 제57조제⑦항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99,692,117,080	
	택지비 가산비	15,598,633,978	–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재산세, 교육세 등), 연약지반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소계	115,290,751,058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174,948,342,892	– 지상층 건축비, 지하층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15,052,130,975	– 법정초과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초고속통신특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소방시설내진설비, 분양보증수수료 등
	소계	190,000,473,867	
합계		305,291,224,925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22019-101-0004200호	₩ 213,701,2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동별사용검사)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보증 주요내용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들이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사용자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한 달 이내에 보증사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보증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도서, 설계도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합니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계좌등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 도래하는 입주금(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하는 입주금 포함)
7. 입주금 외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에 관한 입주금 및 중도금을 대납한 경우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가 아닌 천재지변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주택의 조건 외 ... 분양하는 주택 ...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다만, 사업승인 ...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5조의 보증채무를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사고일 이후 ... 채무
15. 주채무자 또는 분양계약자 · 시공자 등이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가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가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보증편입을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회사
상호	㈜유승종합건설	㈜유승종합건설
주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 7층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 7층
법인등록번호	120111-0497778	120111-0497778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hndapt.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현 공공주택지구 고1부지(장현동 331-1번지 인근 유승한내들 견본주택)
■ 분양문의 : ☎ 1811-051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811-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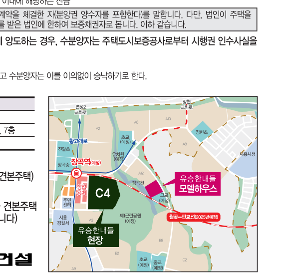
시행·시공 ㈜유승종합건설